

September 29,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4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9. 21. ~ 9. 25.)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을 첨부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제3차 한국판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2020. 9. 18.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참석한 TF회의에서 ①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②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③ 그린 뉴딜 R&D 전략 및 향후계획, ④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더불어민주당), ⑤ 법·제도 혁신과제 제안(벤처기업협회), ⑥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이 논의됨

[참고자료] 제3차 한국판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기재부2]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0. 9. 21. 전략회의에서 ① 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②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③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④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등이 논의됨

[참고자료]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산자부] 그린뉴딜을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 수립·발표

2020. 9. 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하기로 함. 6대 핵심 유망분야는 ① 태양광 운영관리, ②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③ 풍력 지원서비스, ④ 전기차배터리 관련서비스, ⑤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 ⑥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로 정함

[참고자료] 2025년까지 그린뉴딜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 에너지 스타기업 4,000개 발굴·지원



[참고자료]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20. 9. 23.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②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③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④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⑤ SMS 방식의 출금 동의서비스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국토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0. 9. 15.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어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37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기반시설 관리계획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및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임.

[과기부·기재부·조달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2020. 9. 22.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②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③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이 있음

> 입법예고 법안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2020. 9. 21.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채권수탁추심업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① 시·도지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하여 공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②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43조)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국제기준 제·개정 상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국외사무소 운영 업무 등 전담기관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산자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설날 또는 추석에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산자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2인)」

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및 제231조의2 신설). ②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224조의3제1항). ③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4조의3제6항 신설)

[과방위]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②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0조). ③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고, 앱 마켓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자와 콘텐츠개발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22조의9 신설)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협회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되는 상임위는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복지위, 국토위, 과방위 등입니다. 한편, 2020. 9. 28. 기준으로 국정감사 일정 등이 수록된 국정감사계획서는 7개 상임위에서 모두 확정되었으나, 금번 국정감사의 경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증인 채택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변경사항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